

EU·영국, 빅테크 기업 규제 본격 시행 예정

- 미국은 소극적인 모습 보여 -

2023. 4. 24. EU 집행위원회는 2022. 11. 16.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규제대상 19개를 발표한 바 있고, 해당 규제는 2023. 8. 2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EU는 디지털시장법, 기가비트 인프라법 등 빅테크 기업 규제안을 준비 중에 있고, 영국도 최근 EU의 입장을 따라 강화된 규제 사항이 담은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 제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발현지인만큼, EU·영국과는 다르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배경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단연 선두에 서 있는 곳은 EU입니다. EU는 2020. 12. 15.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의 입법 제안으로 이루어진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초안을 발표하며 본격적 규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두 법안은 2022. 11. 발효되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2023. 5. 2. 시행되었으며, 디지털서비스법은 [2023. 4. 24. 규제대상 19개 발표](#) 이후 2023. 8. 2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2021. 4.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격인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내에 빅테크 규제를 위한 부서로써 소셜미디어·검색 엔진·전자상거래와 등과 같은 신규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부(Digital Markets Unit, DMU)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어 최근 2023. 4. 25. 영국 정부는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Bill)' 제정안을 선보이며 규제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고향인만큼, 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만큼이나 자국산업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도 거센 편이며, 따라서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우선, EU의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법안을 살펴보면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진행과정	주요 내용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0. 12. 15. 집행위원회 제안2022. 7. 5. 의회 최종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게이트키퍼(Gatekeeper)라고 칭하는 기업 등을 규제하여 타 사업체 또는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조건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게이트키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을 경쟁친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1. 1. 발효 • 2023. 5. 2.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률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자가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 CPS)에 적용되며, 이는 온라인 검색 엔진·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등 10가지로 나누어짐 • 게이트키퍼 지정은 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 영향력 등에 따라 결정됨 • 게이트키퍼는 동의 없는 플랫폼간 개인정보 결합 금지, 타 사업자들이 최종 이용자(end user)들에게 홍보 시 플랫폼 무료 제공 의무, 플랫폼 이용 시 게이트키퍼가 관리하는 타 플랫폼 이용 강요 금지 등 의무를 부담함
<p>디지털 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12. 15. 집행위원회 제안 • 2022. 7. 5. 의회 최종 승인 • 2022. 11. 16. 발효 • 2023. 4. 24. 규제대상 19개 발표 • 2023. 8. 25.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형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s)과 초대형온라인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VLOSEs)이 규제 대상 • 집행위원회는 아마존 스토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스냅챗, 틱톡, 트위터, 위키피디아, 유튜브 등 17개 서비스를 VLOPs로, Bing과 구글을 VLOSEs로 지정 •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위한 기준 마련, 이용자 불편사항 처리 방안, 서비스 노출 기준 공개, 이용자 정보 등에 대한 접근권한 명확화, 맞춤형 광고로부터 이용자 보호, 아동 보호 등을 골자로 함
<p>기가비트 인프라법 (Gigabit Infrastructure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2. 23. 집행위원회의 견수령 • 2023. 5. 19. 초안작성 돌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모든 지역인구가 기가급 연결에 액세스하고 기업의 75%가 클라우드 또는 AI에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 • 주요 통신사들이 빠른 속도로 5G망을 구축하도록 지원 •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새로운 정책 도입

영국의 경우에는 2023. 4. 25. 정부에서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 제정안을 선보였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p>이용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서비스 등에 대한 가짜 리뷰 규제 •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동 갱신·첫 유료 서비스 개시·이용 비용 증가 등 상황에서 결제 전 고지 의무화 • 구독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 자세한 서비스 이용 약관 등 고지 의무화 • 구독 서비스 이용자의 보다 편리한 서비스 중단 방법 제공 의무화 • 영국 경쟁시장국에게 보다 더 많은 과징금 부과 권한 부여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산업 관련 기업의 시장 지배력 등을 평가하여 영국 경쟁시장국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Strategic Market Status) 부여 • 전략적 시장 지위를 부여 받은 기업에 대해 영국 경쟁시장국이 행동 수칙(Codes of conduct)를 마련하여 적용 • 전략적 시장 지위를 부여 받은 기업이 영국과 관련있는 타 기업의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거래액이 2,500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 영국 경쟁시장국에 보고 의무 부과 • 영국 경쟁시장국이 기업결합심사에 임하는 기준을 개정하여 대상기업의 영국 내 매출액이 기존 7,000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로 상향되고, 기업결합 당사자들 중 하나라도 영국 내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점유율이 33% 이상 혹은 상당한(substantial) 부분을 차지하고, 영국 내 매출액이 3억5,0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됨 • 기업결합심사 면제에 관한 규정도 새로 추가하여 각 당사자가 영국 내 매출액이 1,000만 파운드 미만이면 면제
----	---

이러한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미국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중국 등의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공화당·민주당의 초당적 법안으로 평가받았던 '오픈 앱 마켓법(Open App Markets Act)'과 '아동온라인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이 2022년 마지막 의회에서도 최종통과되지 못해 의회 문턱에서 좌절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산 플랫폼인 틱톡에 대해서는 적극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하원에 틱톡사용 금지 법안이 발의되어있으며, 현재도 미군은 휴대전화에서 틱톡사용이 금지되어있고, 백악관도 2023. 2. 27. 30일 이내에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몬태나 주에서는 관련 입법이 완료되어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2024. 1. 1. 부로 일반인들도 틱톡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빅테크 규제를 너무 강하게 시작하면 자국의 플랫폼에게 피해를 안기게 되고 경쟁국의 플랫폼에게 빈틈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시사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이처럼 지역마다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근래 플랫폼이 모두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입법과 실무단계에서의 법률 적용에 대해 기민한 자세로 기다리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선임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T. (+82) 2 6182 8505

E. kangsj@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